

# 노랑풍선 윤리규정

제정	2014년 01월 02일	001
개정	2019년 09월 23일	002
개정	2022년 10월 07일	003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주)노랑풍선(이하 "회사"라 함)의 임직원들이 체계적인 윤리경영 실천을 도모하여 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경영성과 향상을 통한 고객 행복의 기여에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적용범위]

윤리경영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이나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임직원"이라 함은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제도"라 함은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과 같은 추진 시스템을 말한다.

1. 윤리행동 강령
2. 윤리경영 신고센터
3. 운영 리스크 관리
4. 윤리경영 홈페이지
5. 직무청렴계약제

## 제2장 윤리경영 위원회

### 제4조[윤리경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윤리경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윤리경영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

②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으며, 대표이사는 위원장으로서 윤리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

1. 위원장 : 대표이사
2. 위원 : 경영총괄, 임원 이상자
3. 간사 : 내부감사부서 책임자

③ 감사(감사위원)는 윤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윤리경영 실천규정 및 관련 지침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주요 윤리경영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

3.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및 교육계획 수립
4. 취약부문·부서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신고제도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5. 실천조직의 개선요청사항 등에 대한 심의
6. 기타 윤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5조[윤리경영 실무담당부서의 지정과 역할]

- ① 윤리위원회는 윤리경영의 실천과 투명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부문별 윤리경영 실무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역할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실무담당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팀의 윤리경영 실천관리 및 이행여부 점검
  2. 윤리경영 실천과 관련된 전 임직원 대상 상담 및 지도
  3. 윤리경영 이행에 대한 모니터링과 취약분야에 대한 윤리위원회로의 개선안 상정
  4. 윤리경영의 실천을 위한 총괄기획과 윤리경영 실천규정 및 윤리행동 강령 제·개정 기획
  5. 윤리행동 강령의 교육
  6. 윤리행동 강령의 위반행위 신고·접수·처리 및 신고인 보호

#### 제6조[윤리경영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방법]

- ① 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 ② 윤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장이 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문서에 의하여 의



결할 수 있다.

## 제3장 제 도

### 제1절 윤리행동강령

#### 제7조[윤리행동강령]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가치판단 및 행동기준으로서 윤리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제8조[적용대상)

윤리행동강령은 회사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 제9조[준수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윤리행동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② 대표이사는 윤리경영의 실천력 제고와 윤리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으로 하여금 필요 시 윤리경영 실천서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2절 윤리경영 신고센터



## 제10조[윤리경영 신고센터]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임직원 및 협력업체 부조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윤리경영 신고센터(이하 "신문고"라 함)를 개설 및 운영한다

## 제11조[신고인의 보호]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신문고를 통한 신고 및 상담 내용을 처리함에 있어서 신고인의 신원을 비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접수 및 조사]

① 신문고는 기업윤리에 저촉되는 모든 사안의 제보나 고발을 접수하고 제보자에게 접수 사실을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단, 명백하게 윤리경영신고와 무관한 내용에 대하여는 회신하지 않는다.

② 신문고는 접수된 고충이나 제보 및 고발 사안에 대하여 15일 내에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사회단체로부터 기업윤리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된 경우
2. 정부 당국으로부터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경우
3. 대중언론매체의 보도에 의하여 기업윤리의 저촉혐의에 대한 문제가 회사와 관련하여 제기된 경우

③ 신문고는 처리결과를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유선 또는 이메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조사결과의 처리]

- ① 내부감사부서는 조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윤리위원회에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② 내부 조사결과는 윤리경영위원회에 절차를 밟아 보고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사내 홈페이지에 조치결과가 공지될 수 있다.

### 제14조[입증책임 및 징계감면]

- ① 신고인의 주장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경우의 입증책임은 신고인에게 있다.
- ② 회사의 임직원이 부정한 행위 또는 윤리강령에 저촉되는 활동에 가담하였으나, 스스로 이에 대한 사실을 부조리신문고에 제보 또는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감면할 수 있다.

### 제15조[신고의 포상 및 보상]

신고내용이 회사의 발생 가능한 유무형의 손실을 예방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표창,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 제16조[신고의 취하]

신고자가 신고접수 한 후 신고를 취하하고자 하는 경우 “종결”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내용이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경우 조사를 지속 진행할 수 있다.

### 제3절 운영 리스크 관리

#### 제17조[운영 리스크 관리]

- ①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부적절한 내부의 절차, 임직원, 시스템, 외부의 사건 등으로부터 초래 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 리스크를 관리한다.
- ② 내부감사부서 책임자는 필요에 따라 운영 리스크 관리대상 및 관리절차 등을 정한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4절 윤리경영 홈페이지

#### 제18조[윤리경영 홈페이지]

- ① 회사 윤리경영 추진의지 및 추진현황이 투명하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도록 회사 홈페이지 내에 윤리경영 전담 코너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윤리경영 홈페이지를 설치한다.
- ② 주요내용은 윤리규범, 윤리경영 추진체계 및 현황, 신문고, 윤리경영 자료실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5절 직무청렴계약제

#### 제19조[직무청렴계약제]

- ① 회사는 투명하고 청렴한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대표이사의 허가를 득하여 직무청렴계약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직무청렴계약제를 실행할 경우 윤리위원회와 부문별 실무담당부서는 적용대상 및 적용절차 등  
을 정한 관리지침을 운영하도록 한다.

## 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 제20조[사회공헌]

- ① 회사는 지역사회 및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사회봉사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재정적 지원 장치  
를 마련하여야 한다.

### 제21조[주주의 이익 보호]

- ① 주주의 알 권리를 존중하며 주주 및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제공한다.
- ②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주주 및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 보호한다.

### 제22조[환경보호]

- ① 지역사회 및 국가의 자연환경 보호정책에 부응하여 전 임직원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대상으로  
서의 환경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환경보호와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환경보호 활동 전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도적·재정적 지원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01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2년 10월 07일 부터 시행한다.